

일본군위안소정책과 위안소경영자

니시노 루미코 (西野留美子)

머 리 말

일본군의 위안소설치 및 「위안부」연행등이 강제매춘사건으로서 전후에 재판
을받은 예가 있다. 자바섬의 바타비아 (현재의 자카르타) 에서 열린 네덜란드의
BC급전범재판이 그것이다. 전후 바타비아에서 열린 군법회의에서는 자바섬의 수
마랑, 안바라와의 4해 억류소에서 네덜란드인여성 35명을 연행하여 수마랑에
「장교클럽」 「수마랑클럽」 「히노마루클럽」 「靑雲莊」 등 4개 위안소를 개설한데
대해서 그 책임자, 실행자를 전범으로서 재판에 걸었던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결의나 환보벤씨의 보고에도 있는바와 같이 일본군「위안부」전
후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자처벌의 제기는 가해국과 피해국 쌍방에 있어서
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 되어있다. 처벌의 문제가 「보복」 혹은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도의의 회복」으로서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선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면서 바타비아군사법정에서
위안소정책의 무엇이 심판을 받았는가, 누가 어떤 근거로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내용과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서 중요하다
고 본다.

1. 바타비아 군사재판

· 피고인 13명, [] 내는 구형, ※는 죄명

- ①육군중장-징역12년 [사형] ※매춘강제죄, 강간죄, 억류자부당취급
- ②육군대좌-징역15년 [사형] ※부녀자를 강제매춘으로 연행한 죄, 매춘강제,
강간죄
- ③육군소좌-사형 [사형] ※위와 같은 3항목
- ④육군소좌-징역10년 [징역10년] ※부녀자를 강제매춘으로 연행한 죄, 매
춘강제
- ⑤육군소좌 [군의] -징역7년 [징역10년] ※억류자부당취급
- ⑥육군대위 [군의] -징역16년 [징역20년] ※강간죄, 억류자부당취급
- ⑦육군대위-징역2년 [징역2년] ※억류자부당취급
- ⑧육군조장 (曹長) -용의사실 없어 무죄
- ⑨육군군속 [사정관 (司政官)] -무죄 [징역5년]
- ⑩육군군속 [위안소경영자] -징역20년 [사형] ※매춘강제죄
우와 같음-징역15년 [징역20년] ※매춘강제죄

우와 같음-징역10년 [징역5년] ※매춘강제죄

우와 같음-징역7년 [징역5년] ※매춘강제죄

〈개설에서 폐쇄에 이르는 경과〉

1944년 1월, 육군중장① [간부후보생대대장·남방군직속, 제16군수마랑주둔 지사령관 견임]은 억류소에 있는 2만명의 부녀자들중 100명정도의 「지원자」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후 수마랑주장관 [일본인]한테서 「억류소의 부녀들을 사용한 위안소 설립의 희망」이 전해졌다. 「위안부」의 선별은 州庁측이 실행하였다.

같은 해 2월에 제16군사령부가 차지한 바타비아로 가서 위안소를 신설할 데 대해서 참모부에게 문의하였다. 이 때 「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위안소는 병참의 관할이므로 그 담당소좌가 계획서를 가지고 바타비아로 가서 정식한 허가를 받았다.

여자들 속에는 경동맥을 잘라 자살한 자, 발광한 자도 있었다. 매춘을 거부했을 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받은 자도 있었다.

같은 해 4월에 위안소는 폐쇄되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시찰을 하러 온 대좌가 강제매춘의 사실을 알고 제16군에게 폐쇄를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사실인정〉

억류소로부터 연행되어 위안부로 된 약 35명의 부녀자들중 군사법정이 강제매춘을 위한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연행이라고 인정한 것은 3개억류소의 25명이다.

〈판결문〉

「실행된 전쟁범죄는 그 자체가 이미 심각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그것이 억류소의 극히 열악한 조건하에서 장기간 생활해 온 부인이나 소녀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경우 가장 심각한 범죄의 하나로 된다.

일본의 점령당국은 이러한 부인이나 소녀들의 자유를 빼앗으므로써 …… 그녀들을 완전한 예속상태로 몰아 넣었다. 점령당국의 대리인들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 기만, 폭력,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억류소로부터 부인이나 소녀들을 연행하였다.

부인과 소녀들이 처음은 저항을 한후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느낀치고 저항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그녀들이 그 후로부터는 자유의사로 매춘을 했던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안소를]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복종은 ……

거기서 행사된 강제력이 작용하는 범위내에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이며 거기서는 기본적자유가 전혀 보장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위안소들의 설립과 인원확보계획 및 개업, 경영을 약간의 인정도 없이 냉혹하게 그리고 실무적으로 실시한 피고인들은 중요전쟁범죄인의 범주속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 재판과 그 판결은 주목을 끌만한 것이다. 그러나 위안소개설을 허가한 제16군이나 州庁관계자는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았고 BC급전범재판과 마찬가지로 항상 말단의 실행자들만이 전범으로서 판결을 받고 명령의 주체자가 그 책임을 면해 온 역사는 현재 제기되어있는 전후보상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죄가 가해진 위안소경영자의 실태는 군과의 관련이란 점에서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 위안소의 경영을 위임받은 자들 속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도 많이 섞여 있었다. BC급전범재판에서는 포로수용소의 감시를 한 말단의 실행자였던 수많은 조선인이 실행에 처해진 끝에 일본국적을 잃은 후에도 그 죄만은 남아 형기를 끝까지 지내야 했던 모순과 부조리가 상기된다. 위안소정책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모순을 역사적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형벌을 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며 그를 위해서 회피할 수 없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피고에 대한 판결사실의 개요〉

· 육군대좌② [유기형 15년]

「계획의 입안과 실현에 협력하였다. 부하의 군인 혹은 민간인이 위안소에서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요하는 등의 전쟁범죄 행위를 저지름을 묵인하였다」

· 육군소좌③ [사형]

「병참관계담당장교로서 위안소 개설허가를 군본부에 신청하였다. 여성들의 전원 혹은 대부분이 강제수단없이 매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태만한 사실, 그리고 위안소에서 여성을 협박하여 매춘을 강제하여 또한 부하의 군인 혹은 민간인이 그러한 전쟁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였다」

· 민간인 [유기형 10년] ※별건

「1943년 9월부터 1945년 9월경까지 자바섬 바타비아에서 민간인을

위해서 설립된 위안소를 경영, 이 시설에서 매춘시키기 위해 여성들을 모집하고, 또는 모집시켜서 응모해온 여성이 그만두려고 했을 때에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협박하여 자유로이 그만둘 수 없겠끔 매춘을 강제, 그 자유를 빼앗았다」

2. 위안소경영자와 군과의 관련

위안소를 경영하자고 하면 민간인은 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위안소경영을 맡은 민간인은 군의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또 위안소경영을 위해 도항허가를 신청한 경우 영사관경찰은 그 민간인의 신분조사를 하여 그 결과 허가된 자에게 도항허가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위안소를 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사관경찰이 가까이에 없는 경우에는 소속부대장 혹은 소할헌병대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도항할 수도 있었다. [『渡支事由證明書 등의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對岸지역에로의 도항자 취급에 관하여』 1940년]

경영자는 「위안부」로서 징집한 여자와들 함께 군이 지시한 전지로 군용선 혹은 군의 트럭, 혹은 군의 감시가 붙은 철도등으로 수송되어 군이 마련한 위안소로 들어가 거기서 경영을 도맡아 했던 것이다.

위안소경영자의 특징의 하나로서 일본인만이 이 일에 종사했던 것이 아니라 조선인도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위안부」들 속에 조선인여성이 많았던 것과 관련된다. 여성들의 생활관리,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의 업자가 좋다고 판단되었던 것이라고 본다. 물론 그러한 조선인업자들도 군의 관리, 지시하에 행동했던 것이다.

한 경영자의 경우를 예들어 보아 본다. 경성(京城-서울)에서 요리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부부는 더 많이 벌기 위해 처의 여동생과 함께 버마에서 위안소를 경영하려고 계획했다. 그들은 군위안소를 경영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경성의 육군사령부에게 신청했다.

허가가 내린 후 그들은 19살부터 31살까지의 미혼의 조선인여성들 22명에게 전차금(前借金)을 주어서 모집하였다. 그 때 준 돈은 300~1000엔이었다. 1942년 7월에 그들은 여자들을 데리고 부산을 떠났다. 이 때 703명의 조선인여성과 90명의 일본인(경영자를 포함)이 동승하였다.

여성들이 당초에 맺은 「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 「수입」의 50%를 받는다.
- 교통비, 의료비는 군당국의 부담이 됨으로 무료.
- 식량은 군의 화물창(貨物廠)의 지원을 받아 위안소경영자가 구입함으로써 무료

· 이자를 포함하는 빚을 다 돌렸을 때에는 조선으로 돌아 가는데 필요한 교통비를 무료로 지급, 자유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실지로는 단 한사람도 귀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의상이나 필수품들을 구입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걸리는 등, 당초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7월에 들어서면서 「위안부」들은 경영자들과 함께 군복을 입고 배를 타서 이라와지강을 내려갔다가 전투에 말려 들어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으며 8월에는 카친족에 붙잡혀 포로로 되었다.

한편 1944년에 조선인 「위안부」 20명과 위안소경영자의 2명이 버마의 미이트키이나 (Myitkyina) 에서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녀들로부터 청취한 심문보고서에는 징집과 위안소내의 형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42년 5월초 일본인 주선업자들이 조선반도로 도착, 「부상병들을 돌봐주는 일이 있다」는 등의 구실하에 여자들을 유혹, 2,300엔의 전차금을 주었다. 이렇게해서 모집된 조선인여성들은 약 800명에 달하였다. 1942년 8월 여자들은 위안소경영자와 함께 랑군에 상륙, 버마각지의 위안소로 분배되었다.

여자들에게는 「번 돈」의 50~60%가 지불되었으나 식비 기타 생활비등이 과다하게 높이 책정되어 그녀들의 생활은 아주 어려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합군에 의한 폭격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일인용 참호속에서도 성행위를 강요당한 여자도 있었다. 위안소가 폭격을 맞아 부상하거나 사망한 여자도 있었다.

7월이 되어 여자들은 경영자나 종업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라와지강을 건너 피난하려고 했으나 소규모의 전투에 말려들어 산산이 흩어졌다. 민가에 숨어 있다가 영국인장교가 인솔하는 카친족병사들에게 붙잡혀 포로수용소로 연행되어 겨우 목숨을 이었다. 이상은 심문조서에 의한 파악이다.

다음으로 버마의 위안소경영자를 예로 군과 경영자의 관계를 보아 본다. 버마에서 위안소경영을 한 경영자의 경우 중국에서 「위안소를 경영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에 당시 살았던 지방을 중심으로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을 모아 버마로 도향하였다. 그는 위안소를 경영하게 되면서 군과 계약서를 교환하였다. 군은 위안소경영자들을 모아 설명을 했을 때 「남방파견군이 통제하고 있다」라고 언명했다고 한다.

군이 지정한 날에 집합한 경영자와 여자들은 군의 어용선을 타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랑군으로 도착, 군의 트럭을 타서 위안소로 연행되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군은 민간의 건물을 위안소로 접수하고 독방을 만드는 등 시설을 차려 놓았다. 또 부대배치와 인원수에 맞추어 「위안부」를 분배하는

일도 해놓았다.

위안소를 이용하는 날은 군이 지정했으며 결정된 날에 따라 각 부대가 찾아왔다. 요금은 접수에서 경영자가 받았다. 위안소의 명칭이 찍여진 「이용권」을 요금과 교환으로 내는 위안소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어느 여자한테 갔는가를 군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병의 항에서 상술한다)

위안소에 오는 군인들 속에는 술에 몹시 취한 자도 있어 거부하는 여성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폭행에 관한 증언은 수많은 전 「위안부」들로부터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곤문서 속에서도 위안소내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위안소단속규칙」 「위안소시용규정」 등의 기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폭행의 사실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것이 단속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간과못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한다.

경영자는 여자들에게 4대 6, 혹은 50%의 「보수」를 지불했지만 그 금액은 각 여성의 빛, 의료비, 생활비, 의상값등의 명목으로 감소되었다. (군에 직속하는 위안소에 배치된 「위안부」의 경우 일체 「보수」를 받지 않았던 예가 많다)

군이 계약한 민간경영의 위안소로 배치된 여성들 속에서는 단기간에 채무를 돌린 예도 있으나 이에 의하여 그러한 여성들이 자유로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를 따져보면 역시 아주 드물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버마에서는 전황이 악화함으로써 귀국할 방도가 없어 그냥 전장에서 군인들과 같이 남게 되었다. 폭격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혹은 「玉碎」전후에 살육,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끔 연합군에 위해서 보호되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여성들도 있었다. 전황이 악화함에 따라 경영자는 위안소를 그만두어 「위안부」들을 군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예도 흔히 듣는다. 민간위안소로 배치된 여성들의 통제권도 총체적으로는 군의 손아귀 속에 있었던 것이다.

3. 헌병과 위안소

다음에 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안소에 관여하였는가를 알기 위해서 헌병의 증언을 보자.

헌병상등병이었던 I 는 1944년, 45년에 중국동북부의 白城子에서 그가 하는 일은 병사들이 가지고 오는 「허가증」의 회수였다. 명함크기의 「허가증」은 병사는 검은 색, 하사관은 푸른 색, 장교는 빨간 색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언제, 누가, 어느 「위안부」로 갔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매일 그것을 위안소로부터 회수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목적은 두가지 있었다.

하나는 방첩대책이다. 같은 「위안부」한테 몇번 다녀서 「단골」이 되면 군사상의 기밀이 「위안부」를 통해 누설되는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특정 「위안부」를 자주 찾아가는 자가 없는가 하는데 대한 파악이 엄격히 수행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적발된 병사는 부대에 통보하여 조사하였다고 한다.

둘째로, 한달에 몇번이나 위안소로 가는 병사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특히 병사들의 급료로서는 외출날이 올 때마다 위안소로 다니는 것은 어려웠다. 혹시 그러한 병사가 있었을 경우 그 병사는 돈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예컨대 비누나 수건등 관에 의한 지급품을 팔고 있지는 않는가, 즉 범죄에 관련되는 자의 적발이었던 것이다.

또 헌병대는 어느 부대가 어느 요일에 위안소로 가는가 하는 일정도 결정했다. 통과부대나 예정외의 부대가 있었을 경우에는 부대측에서 날자를 정해서 「그 날에 우리 부대는 위안소로 가고 싶으니 잘 부탁한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으며 헌병대가 그 허가와 조정을 담당했다고 한다.

I 자신은 여성들의 징집에 직접 관계하지 않았으나 사료(史料)를 통해서 징집시에 경찰이나 헌병이 동행한 예, 또는 업자가 유괴에 가까운 방법으로 여성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 사회문제로 되는 것을 통제하고 그 임무를 맡는 인물은 군이 임명하고 현지의 헌병, 경찰당국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던 사실들이 확인되어 있다.

맺 음

일본군의 「위안부」로서 성노예로 되고 만 여성들은 하루 몇십명의 군인의 성의 상대를 강요당하였다. 그것은 관헌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징집된 여성뿐만 아니라 가령 민간업자의 개제에 의한 채무관계에 있었던 여성도 취로사기나 기만, 감언등으로 속아넘어 위안소에 끌려온 자가 거의이다. 추업조약에서는 그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수단·방법에 의하여 추업을 목적으로 연행하는 것을 규제하고있다. 또 그런 방법이 「강제」이라는 인식을 정의하고도 있다. 여성들의 인권의 박탈이 징집에 있어서도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것없다.

한편 중요한 것은 위안소에 몰아넣인 여성들은 더 가혹한 인권박탈의 생활하에 시달려 인도에 반하는 처우를 받았다는 점이다.

「위안부」에 대한 대우는 연대와 끌려간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있고 다 같이 고정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우선 강조해놓아야한다. 감금·구속상태, 식료사정, 건강저해시의 처치, 「보수」등, 많은 지역차와 시스템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격차를 고려하여도 여성들이 받은 성의 유린과 커다란 인권침해·박탈에 있어서는 그 인식을 주저시키는 것은 아니다.

중국동북지방의 위안소에 끌려간 한 조선인여성은 성의 학대와 더불어 생명

위기를 느낄 정도의 학대와 살육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어느 조선인 「위안부」가 임신하여 산월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군인들은 번갈아 그 「위안부」의 배를 군화로 밟았다. 유산시키려고 한 것이다. 태아가 머리를 보였을 때 군인은 손으로 끌어 내어 그 애기를 개에게 먹이려고 하였다고 한다. 설마 개는 먹지 않았다고 하지만 얼마없이 모자는 죽었다.

또 군인의 말을 앓는 「위안부」에 징벌을 가하기 위하여 무릎에 물로 적신 목재를 끼우고 그 허벅다리를 막대기로 친다는 폭행을 가했다는 케이스도 있다. 또 군도(칼)로 치려고 대들거나 목을 잘랐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잔학한 학대의 예는 노예로 안될 자유의 침해와 동시에 「민간인에 대한 살해·선멸·노예화·연행……」을 금지하는 「인도에 대한 죄」의 침해이며, 「비점령국주민 혹은 비점령국에 체류하는 자를 살해하고 학달하고 혹은 노예적노동과 기타의 목적으로 끌려감……」을 금지하는 전쟁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부연한다면 이런 잔학한 사역의 실태는 비교적 민간의 위안소보다도 군직의 위안소에서 군인에 의하여 가해진 케이스가 많다.

현재 처벌에 대한 요청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처벌을 생각하자면 상세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진상규명에 의하여 주체적책임이 뚜렷이 된 후에 재발방지대책으로서 처벌은 생각되는 것일 것입니다. 처벌의 인식이 불충분한 시기에 그것이 선행하므로써 결과적으로 귀중한 증언자의 입을 다물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진행하는 현시점에서 그것이 가해자측의 자발적 행위로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진상규명 속에서 응당히 책임의 주체는 명백히 되며 그 시점에서 처음으로 「처벌」은 불가분한 문제로서 떠오를 것입니다.

전후보상문제의 해결을 향하여 중요한 것은, 일본인이 역사인식에 각성이 되고 진실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 가해자의 아픔을 자국의 아픔으로 여기고 후세에 진실을 전해 갈 자세를 주체적국민의식으로서 일본인 자신이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도 처벌의 문제는 일본의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고가는 과정에서 신중히 생각해나갈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견해는 자료센터의 통일인식으로서가 아니라 내개인의 견해로서 문제제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